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87호
- 나. 발 의 자 : 문성호 의원(찬성자 32명)
- 다. 제안일자 : 2022년 8월 26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2. 제안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미술관 관계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 및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등 신규 시설 개관에 따라 미술관의 수집 대상이 미술 관련 자료로 확대되어 조례상 수집 대상의 정의 및 범주 정비가 필요함(안 제2조).
-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체공휴일도 개관하도록 함(안 제4조제2호).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를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 라. 안 제2조 개정에 따른 용어 표기를 통일하되, 미술관자료의 수집단계까지는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상의 미술관자료 개념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수집단계 이후 미술관에서 소장하여 보존·관리하는 미술관 자료에 대해서는 소장미술관자료로 규정하되, 열람 또는 대여 대상은 범위를 넓혀 미술관자료로 규정함(안 제21조부터 26조까지).
- 마. 실제 운영과 불일치하는 미술관자료추천회의 구성을 현행화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명시함(안 제22조 및 제26조, 제31조제3항).
- 바. 운영자문위원회 외부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 되도록 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안 제28조제1항).
- 사.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화함(안 <별표>).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미술관 관계 법령,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휴관제외일 확대, 관람료 면제자 확대, 관련 위원회 신설 등 현행 제도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

나.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

- 개정안은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의 개관으로 미술관의 수집자료를 미술작품 이외 자료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관련 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4호 “미술관자료”의 정의를 준용하여 이를 조례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기타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는 11월 정식 개관에 앞서 2021.12.21. 온라인 시스템을 오픈하고, 한국현대미술의 주요 작가의 작품을 포함한 드로잉, 일기 등의 창작과정까지 디지털화하여 약 3,000여 건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였음.
-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실제 작품과 자료의 범주가 모호해지고, 작품 이외의 관련 자료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는 환경에서 작품과 자료의 엄격한 구분보다는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는 개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2조제1호에 미술관의 작품과 자료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4호의 “미술관자료” 용어를 준용하고, 그 하위개념으로 제2호, 제3호에 각각 “소장작품”과 “소장자료”를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각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다. 휴관 제외일 확대(안 제4조제2호)

- 개정안은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인 경우까지 휴관하지 않도록 휴관제외일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 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u>공휴일일</u>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 ----- -----. 1. (현행과 같음) 2. ----- ----- ----- <u>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일</u> -----

- 서울시에 등록된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26개로 개별 조례 또는 자체 방침으로써 휴관일을 정하고 있으며(붙임1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휴관일 현황), 현행 서울시 조례에는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되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을 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휴관 제외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대체공휴일을 포함할 경우 개관일수는 최대 7일 까지 증가하게 됨(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 따른 대체공휴일).
- 미술관의 개관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라. 관람료 면제대상자 추가(안 제9조)

- 개정안은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미술관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하려는 하는 것임.

< 보훈 관계 법령 등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현황 >

법령	대상자	대상 시설 및 감면 정도
보훈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독립유공자법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참전유공자법	유공자 본인
	고엽제법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 환자
	5·18유공자법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해등급 1~3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법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기타 법령	의사상자법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중 선 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 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국군포로송환법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이용료 면제
 - 고궁 및 능원
 - 국공립 공원
 - 독립기념관
 - 전쟁기념관**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국공립 수목원
 - 국공립 자연휴양림

○ 이용료 50% 이상 감경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 의사상자법의 경우 대관공연·대관전시 제외

- 현행 조례 제9조제1항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호부터 제5호까지) 등 3개 법령에 따른 무료관람 대상자만을 나열하고 있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6개 법령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미술관에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알림에 따른 정비대상 통보 및 입법추진 요청’ (법무담당관-3019, 2021.2.23.) 공문을 통해 누락된 법령상 관람료 면제대상을 보완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 따라서 국공립 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6개 법령을 조례에 추가하여 미술관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정합성 유지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마. 관련 법령 간의 정비사항 등(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박물관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할 경우 감정평가를 위한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의결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가격평가심의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③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및 개인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3(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관련 법령은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주체를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 으로 정하고 있어 공립 미술관인 서울시립미술관이 해당 규정에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조례 주요사항의 대부분이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가격평가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소장작품 구입) <u><신 설></u>	제22조(미술관자료 구입) <u>⑤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u>

- 다만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이미 가격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만 명시하도록 함.

바. 수증심의위원회의 신설(안 제26조)

-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의결 절차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작품기증) 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u><신 설></u>	제26조(미술관자료기증) ① ----- 소장자(처)로부터 미술관자료기증신청--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u>② 수증심의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3</u>

<p><신 설></p>	<p>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p> <p>③ 수증심의위원은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시까지로 한다.</p>
<p><신 설></p>	<p>④ 미술관자료기증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 위원 상호 간 중복 위촉하지 아니한다.</p>
<p><신 설></p>	<p>⑤ 수증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p>

- 현행 조례는 소장작품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은 모두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어 수증여부의 결정권 또한 운영위원회가 맡고 있음.
- 2016년에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수증여부는 수증심의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나 현재 미술관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수증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관련 법령과 일치하도록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2는 수증심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준용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명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사.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구성(안 제28조)

-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미술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제28조(위원회 구성) ① ----- -----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만,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u>의원</u> 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 ----- ----- <u>의원 및 당연직 위원</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이 위원회는 미술시책의 방향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등 미술관의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위원회 위원의 수와 자격 외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2020-419호, 2020.9.7.)는 대관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위원회의 위원에 박물관·미술관의 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 또한 조례로 규정하여 그 구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외부위원의 비율과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은 위원회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차원으로 이해됨.

아. 미술관 시설 현행화(안 제3조, 안 별표)

-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3조에서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별표 1」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별표」로 표기하고, 그 내용을 현행화하는 것임.
- 현행 조례는 「별표 1」에서 미술관의 여러 시설별 주요기능란을 두었는데, 이는 시설별 기능을 해당란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바,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립경희궁미술관은 과거 경희궁지 내 위치하여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으로 운영되었으나 서울시의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2019년 철거되었으므로 별표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위치	주요기능	명칭	위치	<삭 제>
서울특별시립 미술관	중구 덕수궁길 61 (서소문동 37)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지 기능	서울특별시립 미술관	중구 덕수궁길 61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립 남서울미술관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남현동 1059-13)	생활미술관 기능	서울특별시립 남서울미술관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남현동 1059-13)	
서울특별시립 경희궁미술관	종로구 새문안로 45(신문로 2가 2-1)	미술단체 기획전	<삭 제>		
서울특별시립 북서울미술관	노원구 동일로204길 13(중계동 508)	공공미술 콤플렉스 기능	서울특별시립 북서울미술관	노원구 동일로204길 13(중계동 508)	
난지미술 창작스튜디오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상암동 481-6)	레지던시 및 국제프로그램 운영	서울특별시립난지 미술창작스튜디오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상암동 481-6)	
<신 설>			SeMA 참고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역신파크 5동)	
<신 설>			SeMA 백남준기념관	서울 종로구 종로53길 12-1(창신동)	
<신 설>			SeMA 병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지하 76(여의도동)	
<신 설>			서울특별시립 미술아카이브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101	

- 또한 현재 미술관은 서소문본관과 11월에 개관 예정인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를 포함한 7개 분관을 운영 중임에도 현행 「별표 1」은 2015.7.30. 개정 이후 수정된 적이 없음.
- 따라서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술관 시설목록을 현행화 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붙임1

국립박물관·미술관 휴관일 현황

○ 서울 등록 국립박물관·미술관: 26개 (박물관 21개소, 미술관 5개소)

- 개별 조례를 통해 1월1일, 월요일, 설날 및 추석을 정기 휴관일로 지정·운영

※ 필요 시 정기 휴관일 외 임시 휴관

번호	박물관·미술관명(지역)	휴관일	관련 조항
<박물관 21개소> - 시립 8 /구립 12 /교육청 1			
1	서울역사박물관(종로구)	1월 1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개관 및 휴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3.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2	청계천박물관(성동구)		
3	서울생활사박물관(노원구)		
4	한성백제박물관(송파구)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개관)	
5	서울우리소리박물관(종로구)		
6	공예박물관(종로구)		
7	수도박물관 (성동구)	1월 1일	별도 조례 없음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자체 방침 근거 (상수도사업본부)
		월요일	
		설날, 추석	
8	서울상상나라 (광진구)	1월 1일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보육담당관) 제4조(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① 서울상상나라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 연휴, 추석 연휴	
9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동대문구)	1월 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한방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② 한방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10	돌리뮤지엄 (도봉구)	1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돌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① 뮤지엄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p>다음 날로 한다.</p> <p>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별히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p> <p>② 뮤지엄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p>
11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대문구)	1월 1일	<p>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제4조(개관 및 휴관일) 박물관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p> <p>1. 1월 1일, 설날, 추석</p> <p>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p> <p>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p>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12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구)	1월 1일	<p>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역사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전시품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p> <p>②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9. 15)</p> <p>1. 1월 1일, 설날, 추석날</p> <p>2.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p> <p>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p>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13	성북선잠박물관 (성북구)	1월 1일	<p>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p> <p>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1월 1일</p> <p>2. 설날 전일, 설날 당일, 설날 다음일</p> <p>3. 추석 전일, 추석 당일, 추석 다음일</p> <p>4.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p> <p>5.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p>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 연휴, 추석 연휴	
14	손기정기념관 (중구)	1월 1일	<p>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p> <p>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p> <p>1. 1월 1일, 설날, 추석</p> <p>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p> <p>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p>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15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 (강동구)	1월 1일	<p>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휴관일)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p> <p>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한다), 1월 1일</p> <p>2. 임시 휴관일: 구청장이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p>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6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은평구)	1월 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개정 2016. 10. 20.) 1.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 연휴, 추석 연휴					
17	허준박물관 (강서구)	1월 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시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문화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허준박물관</td> <td>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td> </tr> <tr> <td>검재정선미술관</td> <td>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td> </tr> </table>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허준박물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검재정선미술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허준박물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검재정선미술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월요일							
설날, 추석							
18	송파책박물관(송파구)	1월 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기타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19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중구)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 내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시설 개·보수, 전시관 전시물 교체 등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휴관일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20	종로구립 고희동 미술자료관 (종로구)	1월 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제5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21	서울교육박물관 (종로구)	법정공휴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이용 규칙 (교육청) 제3조(휴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함) 2. 정기휴관일 : 월2회(휴관일은 내규로 정함) 3. 임시휴관일 : 관장이 장서점검, 보수공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1, 3주 수요일					

<미술관 5개소> - 시립 2 /구립 3

22	서울시립미술관 (중구)	1월 1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2. 3. 15.>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날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개관)					
23	DDP디자인뮤지엄 (중구)	1월 1일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날				
		월요일 (프로그램에 따라 개관)					
		설날, 추석					
24	성북구립미술관 (성북구)	1월 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제4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개정 2020. 5. 14.)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월요일					
		설날, 추석					
25	검재정선미술관 (강서구)	1월 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시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문화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허준박물관</td> <td style="padding: 2px;">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td> </tr> <tr> <td style="padding: 2px;">검재정선미술관</td> <td style="padding: 2px;">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td> </tr> </table>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허준박물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검재정선미술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허준박물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검재정선미술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월요일							
설날, 추석							
26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종로구)	1월 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제5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 **국립박물관·미술관**

- 1월1일, 월요일, 설날 및 추석을 정기 휴관일로 지정·운영, 필요시 임시휴관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월요일 개관**

연도	박물관·미술관명(지역)	휴관일	관련 조항
1	국립박물관	1월 1일	<p>국립 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13., 2017. 1. 20.></p> <p>제2조(휴관) ①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13., 2017. 1. 20.></p> <p>1. 1월 1일</p> <p>2. 월요일(「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방박물관 중 부여박물관·공주박물관·진주박물관·청주박물관·대구박물관·김해박물관·제주박물관·춘천박물관·나주박물관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 한한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p> <p>3. 설날 및 추석</p> <p>②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및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3., 2017. 1. 20.></p>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2	국립미술관	1월 1일	<p>국립 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휴관) ①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16.></p> <p>1. 과천관, 덕수궁관: 1월 1일 및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p> <p>2. 서울관: 1월 1일, 설날 및 추석</p> <p>②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p>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 전국 공립박물관·미술관 사례

- 1월1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정기 휴관, 필요 시 임시 휴관

연도	박물관·미술관명(지역)	휴관일	관련 조항
<박물관>			
1	부산박물관 (부산)	1월 1일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 <개정 2009. 2. 4>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6. 5. 10>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개정 2006. 5. 10> 3.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0, 개정 2009. 2. 4>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2	대전시립박물관 (대전)	1월 1일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제2조(개관과 휴관) ① 대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3. 12. 12>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한다. 2. 그 밖에 전시준비 등을 위하여 대전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3. 12. 12> ② 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3	경기도박물관 (용인)	1월 1일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소속기관의 운영) ① 제30조의 재단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정한 경영본부, 문화예술본부, 지역문화교육본부, 소속기관, 뮤지엄지원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개정 2019.03.19><개정 2021.02.09>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4	속초시립박물관 (속초)	1월 1일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물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3. <삭제, 2008. 12. 18.> 4. 매주 월요일(단, 박물관 관련 행사로 인해 개관할 때에는 그 다음날) <개정, 2008. 12. 18.> 5. 그 밖에 시설물의 수리, 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관장은 제2항제5호에 따라 휴관을 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월요일 (박물관 관련 행사로 인해 개관할 때에는 다음날),	
5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1월 1일,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군산)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제5조(개관 및 휴관일)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3. 시장이 휴관일로 정한 날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6	부천시 박물관 (부천)	1월 1일 법정 공휴일 다음날 설날, 추석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휴관) 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매해 1월 1일 2. 설날, 추석 당일 3. 법정 공휴일 다음날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휴관 7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람객들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실제 월요일 정기 휴무중
7	안산 어촌민속박물관 (안산)	1월 1일 월요일 설날, 추석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 등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물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 등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등의 대청소, 소독, 시설물의 정리·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기간과 사유를 밝히어 휴관 7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한국대나무박물관 (담양)	1월 1일, 2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의 다음날	담양군 한국 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공중에 공개한다. <개정 2017. 03. 03.> 1. 1월 1일, 2일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의 다음날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9	통영 시립박물관 (통영)	월요일 공휴일의 다음 날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1. 매주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예외한다. 4. 그 밖에 시설점검 등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설날, 추석	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시장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10	영월군 박물관 (영월)	1월 1일	영월군 공립박물관.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관 및 휴관일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11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	1월 1일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7.28>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개정 2015.2.2> 3. 삭 제 <2015.2.2> 4.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신설 2020. 10. 5.>
		월요일 (공휴일 또는 연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미술관>			
12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부산)	1월 1일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3	대전광역시립미술관 (대전)	1월 1일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그 밖에 작품 설치 및 철거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14	경기도미술관 (안산)	1월 1일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소속기관의 운영) ① 제30조의 재단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정한 경영본부, 문화예술본부, 지역문화교육본부, 소속기관, 뮤지엄지원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개정 2019.03.19><개정 2021.02.09>
		월요일 (공휴일일 경우 제외)	
		설날, 추석	
15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에게 공개한다. <개정 2007,2008,,2009,, 2016> 1. 1월 1일-설날-추석. 다만, 오후에는 개관할 수 있다. 2. 월요일: 제주도립미술관, 이종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추사관 및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월요일	
		설날, 추석	
16	대구미술관 (대구)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삭제 <2011. 8. 1 조례 제4272호>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단서신설 2011. 8. 1. 조례 제4272호] 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7	양주시립미술관 2개소 (양주)	1월 1일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날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시설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할 경우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18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1월 1일	청주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은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휴관일을 따른다. <개정 2020. 6. 12.> <단서신설 2020. 7. 17.>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p>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p> <p>3.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p>
19	수원시 미술관 4개소 (수원)	1월 1일	<p>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p> <p>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에서 운영시설별로 지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p>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p>1.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및 아트스페이스 광고: 매주 월요일(다만, 해당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한다.)</p> <p>2. 수원미술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매주 월요일</p> <p>3.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매주 일요일 및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p>
		설날, 추석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p>

의안번호
87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문성호 의원	2022.8.26.
주요내용	<p>○ 상위 보훈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 및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임</p> <p>〈주요 개정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수집대상의 정의 및 범주 정비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를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추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관일 확대 - 실제 운영과 맞게 자료수집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 정비 - 대관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 등 		
추진경과	○ 2022. 8.26.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동의함.		
대응방안	○		
상 임 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후계획	○ '22.10.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조례 시행		
담당부서	박물관과	팀장 김득삼(☎2133-4183)	담당 조서영(☎2133-4185)